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국무회의 규정 일부 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무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주 1회 정례적으로 국무회의를 소집하도록 한 의무 조항을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례 국무회의의 소집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 등과 합의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무회의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임시 국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를 “임시 국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례 국무회의의 소집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3일”을 “2일”로 하고, “다만, 법률 공포안, 「대한민국헌법」 제89조제16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의안과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만, 「대한민국헌법」 제89조제16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의안과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4조(합의) 중 “부·처에 관련되는 의안은 사전에 관계 부·처 간의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을 “부·처에 관련되는 의안은 사전에 합의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회의 운영) ① (생략) ② 국무회의는 정례(定例) 국무회의와 임시 국무회의로 구분하되, 정례 국무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u>임시 국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u>	제2조(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무회의는 ----- -----, <u>임시 국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례 국무회의의 소집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u>
제3조(의안 제출) ① ~ ③ (생략) ④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차관회의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u>다만, 법률 공포안, 「대한민국헌법」 제89조 제16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의안과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안을 국무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의사일정과 함께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제8조에 따른 배석자에게 배부한다. <u>다만, 임시 국무회의에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⑥ (생략)	제3조(의안 제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의안은 ----- ----- -----2일----- ----- <u>다만, 「대한민국헌법」 제89조제16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의안과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 ----- ----- ----- ----- <u>다만,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의안 등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⑥ (현행과 같음)

제4조(합의) 국무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의안은 사전에 관계 부·처간의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신 설>

제4조(합의) 국무회의에 -----
----- 부·처에 관련되는
의안은 사전에 합의를 거쳐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

-----.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연 락 처	(02) 2100 - 4084, 4085